

## 「단체관광객 유치마케팅 지원」 사업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「단체관광객 유치마케팅 지원」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3월 19일

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

### 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명 : 단체관광객 유치마케팅 지원

○ 사업기간 : 2025년 3월 ~ 11월

○ 사업내용

1.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대상 차량임차비 일부 지원

- 지원대상

1) 제주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

2) 제주도내 지점(영업소)을 둔 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업체 등

- 지원기간

구분	행사기간	사전신청	비고
상반기	공고일 ~ 6/30	공고일 이후	*상반기 / 하반기 분배 지원
하반기	7/1 ~ 11/30	6/1 이후	예산 소진시 접수마감

**※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행사(3월 27일 이전)의 경우 사전 지원 신청서 제출기한 조건을 「행사 7일전」에서 「행사 1일 전(주말제외)」으로 예외 적용**

- 지원내용

(단위 : 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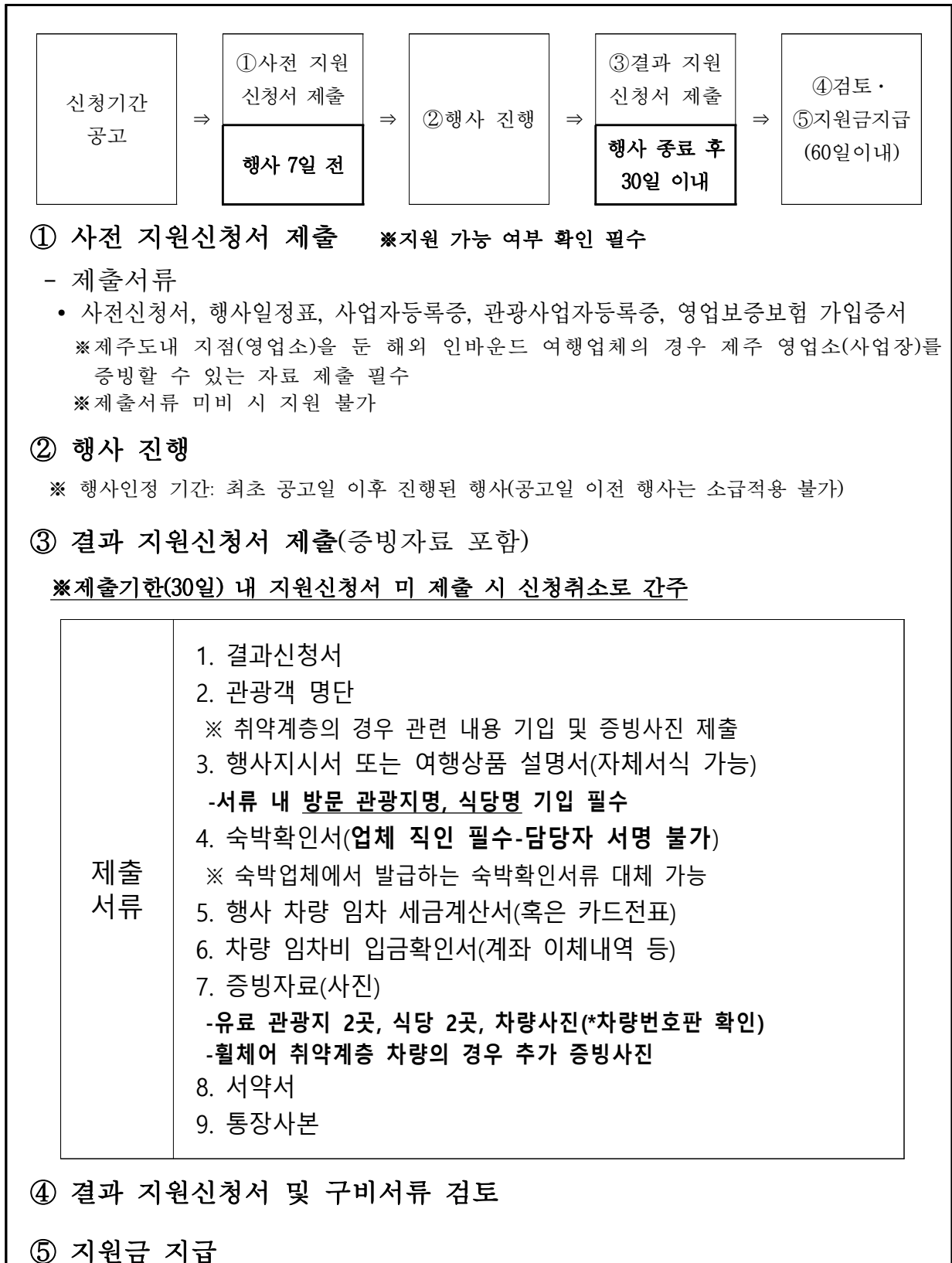
구분	지원금액				비고
	성수기		비수기		
	1박	2박	1박	2박	
10~15인승	300,000	500,000	400,000	600,000	<b>&lt;여행상품 필수조건&gt;</b> - 인원: 10인 이상 - 숙박: 1박 이상 - 관광: 유료관광지·레저관광 등 2곳 이상 - 식당: 2곳 이상 *성수기: 3~5월,9~11월 / 비수기: 6~8월 *성수기·비수기 적용기준은 여행상품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
16~25인승	400,000	600,000	500,000	700,000	
26~45인승	500,000	700,000	600,000	800,000	
리프트버스 *휠체어 취약계층	500,000	700,000	600,000	800,000	
* 지원금액 범위내 실비지원 / 차량 임차시, 해당차량 최소 탑승인원(중형16, 대형26인)미만일 경우, 실제 탑승인원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* 지원한도: 업체당 연 3,500천원					

<여행상품 필수 조건>

구분	내용	비고
숙박	- 「관광진흥법」에서 정한 관광숙박업소 또는 - 「농어촌 정비법」에서 정한 「민박업소」 또는 -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서 정한 일반숙박업소 또는 -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·신고된 숙박시설 및 교육원, 체험마을	1박 이상
관광	- 유료 관광지 또는 - 승마체험, 골프, 해양레저 등 레저관광 또는 - 기념품점, 지역축제, 기업탐방	2곳 이상
식당	-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- 관광진흥법 제12조 관광편의시설 지정 기준에 따른 관광식당업 등록업체 *호텔조식제외	2곳 이상

※ 제주관광 저해를 조장하는 여행상품 제외

## □ 지원절차



## □ 유의사항

### ○ 지원제외

- 동일 행사 중복 지원인 경우
- 동일 행사 협회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인 경우 ※지방보조사업 관리 제32조 4-⑤ 근거
-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나 투어에 의한 경우
-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
-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

### ○ 기타 행정사항

-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음.
- 허위,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조치되며 향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배제함.
- 세부일정, 지원금액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방침과 결정에 의함.

### ○ 신청 및 문의

- 신청: 이메일 신청 E-mail) [incentive@jta.or.kr](mailto:incentive@jta.or.kr)
- 신청서식: 협회 홈페이지(visitjeju.or.kr) - 공지사항 참조
- 문의: 마케팅실 Tel) 064-741-8776 ~ 8778